

제18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
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
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제19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
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29	2001년 9월 일 건설위원회
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

1. 심사결과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8월 20일,
서울특별시시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
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
회 제4차 건설위원회
(2001년 9월 10일 상정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장구 건설국장)

제안이유
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(2000.
7. 1부터 시행)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
된 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
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○ 조례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.
-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
→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
○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
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
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회의
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.(안 제3조)
○ 점용료는 당해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
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
금액으로 하되, 점용예정면적은 효용도 등을
고려하여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회의 심
의를 거쳐 시장이 정함. 이 경우 국가 또는
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보조받은
때에는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공제함으로써
점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공동구 설치의 활
성화를 기하고자 함.(안 제4조)
○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에 관하여 정함.(안 제6조)

-점 용 료
• 공동구에 수용되는 점용시설의 공사착
수 전일까지로 함.
(다만, 시장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의
별도 협의가 있거나 일시에 납부하기
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
8%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
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.)

-사 용 료
•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: 회계년도별
로 구분하여 징수하되, 최초년도분은 공동
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로 하며,
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년도 3월말로 함.
•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: 공동구
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함.

-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현행
조례의 공동구설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삭제함.
-공동구 건설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
-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-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3.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
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(전문위원 박용훈)

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.
○ 도시계획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
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등 상위 법령
의 개정시행(2000. 7. 1)과 관련하여
○ 현행 조례상의 일부 중복규정을 삭제하고
공동구에 대한 점용료, 사용료, 관리비 산정
기준 및 징수방법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
선·보완하여 전체적인 조례 구성체계를 일
관성 있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
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.
○ 본 조례의 명칭을 "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
료등징수조례"로 변경하고 안 제1조(목적)
의 내용 중 공동구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
동구 건설에 대한 의견청취, 설치비용부담
및 공동구에의 수용 등에 관한 현행 조례
제3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하거나 관련 조례
안에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영
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
구 설치에 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, 법
제37조 및 영 제3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
위임하고 있는 공동구 점용료 등의 부과

및 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만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안 제3조(점용허가 등) 및 제4조(점용료 및 사용료)에서 시장이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점용 및 사용에 정면적을 정할 때에는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련 비용부담 등 공동구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그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'서

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조례 개정안' 제18조에 의한 '공동구관리협의회'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공동구 관리업무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또한, 안 제4조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을 보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점용료 산정을 위한 공동구 설치비용 산출시 공제토록 한 것은 영 제3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.

〈 공동구 설치 현황 〉

구 분	계	여 의 도	목 동	가 락	개 포	상 계
시설년도	-	'78. 2	'87. 12	'87. 12	'87. 12	'89. 7
위 치	5개소	영등포구 여의도동	양천구 목동	송파구 가락동	서초구 양재동 강남구 개포동	노원구 상계동
연 장	31.1km	6.1km	11.7km	7.4km	4.8km	1.1km
작 업 구	115	44	16	30	21	4
환 기 구	149	50	27	45	22	5
수용시설	-	전기, 통신, 상수도, 난방	전기, 통신, 상수도, 난방	전기, 통신, 상수도	전기, 통신, 상수도	전기, 상수도

○안 제6조(부과·징수)에서 공동구 점용 예정자의 초기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공동구 시설 수용 촉진 등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점용료 분할 납부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 8%의 이자를 붙여 허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완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(대부료의 납기) 및 제105조의 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)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안 제7조(이의신청)에서는 공동구 점용료 및 사용료와 관리비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, 기타 조례안에서는 체계적 조문정리와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조례 구성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종합의견입니다.

○도시계획법 등 관련 상위법령상의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이 보완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공동구 설치에 관한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공동구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만을 대상으로 조례 구성체계를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

○공동구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할 경우와 점용 및 사용예정 면적을 정할 때에는 '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조례'개정을 통해 그 구성을 추진 중에 있는 '공동구관리협의회'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으며, 점용료 분할납부 허용사유와 기간 및 수납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등 공동구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